

## 특허권의 권리

**Q**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존속되는지요?

**A**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나,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납부 기간 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1일부터는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해서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 제3항).

**Q**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A** 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 등에 의해서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정한 소멸사유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특허법 제88조, 실용신안법 제22조, 디자인보호법 제40조),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81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특허법 제124조,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등이 해당됩니다.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로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สิทธิ·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สิทธิ·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9조, 디자인보호법 제54조).

**Q** 상표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됩니까?

**A** 상표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 등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상표법 제39조), 2007년 1 개정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상표법 제64조 제2항). 또한,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64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불이행에 따른 소멸(상표법 제46조의2),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취소심결이 확정될 경우(상표법 제39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 상표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9조). 다만, 상표권에 사용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

**Q**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A**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상표법 제54조).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제한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없는 권리의 지분포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김석현 변리사

한국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바 있고, 법무법인 총정에서 특허부를 총괄했다. 이자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청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대표 변리사를 지냈으며, 현재 특허법인 대이에서 파트너 변리사로 있다.  
문의 : 02-565-2500  
mail : kimsh@ipdraju.com